

개정세법과 해외선교비 실무 기자회견 및 설명회

개정세법, 해외선교의 길은 변함없이 열려 있습니다.

발제 | 최호운 회계사

회계법인 더함 대표
사)토브협회 이사장
사) 한국해외선교회(GMF) 감사
사) 한국오엠(OMK) 세무자문
글로벌파트너스(GP)선교회 자문

논찬 | 김태정 선교사

남서울 평촌교회 선교 목사
전) Hope 선교회 대표

논찬 | 이천화 회계사

회계법인 성지 이사
사)아시아미션 감사
사)기독교경영연구원 감사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겸임교수

2026. 9. 21. NPOpia 홀



사단법인 토브협회를 소개합니다.

‘사단법인 토브협회’는 2005년, 한국교회 구조 회복의 핵심인 교회재정을, 성경의 원리를 바탕으로 건강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도와 교회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해 대사회적 신뢰 회복을 목표로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시작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토브협회’는 Mission과 재정(Fund)가 만나 가치를 키워가는 교회와 세상, 그 연결의 중심에 서기 위하여 교회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에 이르기까지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 운영 역량을 키우며,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고유한 사명을 이루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17일 창립총회를 열었으며, 이후 기획재정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2025년 7월 9일, 법인이 성립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자원의 근본적인 주인은 삼위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청지기라는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에 교회의 헌금과 재산을 보존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 주인이신 삼위하나님의 뜻에 어긋남 없도록 운영하고 하나님나라의 가치가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우리는 연결, 투명성, 효율성, 성장, 신뢰의 가치 위에서 한국교회가 신뢰의 첫걸음인 재정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일을 돕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재정운영 교육과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 편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나아가 교회의 사회적 신뢰 향상을 위한 ‘자발적 결산서 공개’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로써 교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도뿐만 아니라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최호윤 회계사 (사단법인 토브협회 이사장, 회계법인 더함)

홈페이지 tov.or.kr

Email tov.npo@gmail.com

연락처 02-6951-1391

fax 0505-231-2481

후원계좌 국민 | 006001-04-353709 | 사단법인 토브협회



순서

■ 발제1

최호윤 회계사 |

개정세법이 선교활동에 미치는 영향

■ 논찬1

김태정 선교사 |

■ 논찬2

이천화 회계사 |

■ 질의응답

개정세법이 선교활동에 미치는 영향

- 최호운 회계사 (회계법인 더함 대표
사)토브협회 이사장
사) 한국해외선교회(GMF) 감사
사) 한국오엠(OMK) 세무자문
글로벌파트너스(GP)선교회 자문)

가. 들어가는 글

지난 2월 27일, 상속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액 불산입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등’으로 분류되었던 ‘종교법인’의 정의를 비영리내국 법인으로 한정하면서 이제부터는 선교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절박함의 기사들이 나왔다.

올해부터 해외선교비 면세 ‘사실상 박탈’에 증여세 폭탄 ‘비상’ (8.7, 국민일보)
해외로 보낸 선교비를 과세한다고?... 한국교회 선교 위축될라! (7.24, 아이굿뉴스)
“그냥 선교하지 말라는 건가”...세법개정 이후 해외 선교비, 어떻게(8.7 데일리굿뉴스)

한걸음 더 나아가 시행령 철폐를 위한 움직임이¹⁾ 교단 총회에서도 논의 대상이 되었다.

개정된 세법내용에 대해 a) 정부는 해외 선교활동을 금지하는 것인지? b) 개정된 내용이 선교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c) 개정세법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 관련 법리상 어떤 근거를 가지는가? 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일부분의 내용만을 기준으로 대응할 때 이러한 대응이 선교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나. 증여관련 세법 흐름

세법에서는 종교법인을 여러 형태로 좋은 일을 하는 공익법인 중의 하나로 분류하고

1) <https://v.daum.net/v/20260827220306568> 노컷뉴스, 2026.8.27

이에 따라 종교법인이 수령하는 기부금(출연금,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기부한 사람에게는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종교법인과 종교법인에게 기부한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기부한 출연금이 해당 종교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후 해당 출연 받은 재산이 목적사업에 제대로 사용될 것을 보고하도록 하는 흐름은 모든 공익법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세법 일반 원칙이다.

따라서 선교비에 대한 세금 이슈들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증여세’와 ‘공익법인에 관한 세금 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1. 증여세 과세 일반

1) 과세대상

‘증여’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²⁾,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 이익을 포함한다.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하므로 해외 선교활동으로 선교대상자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경제적 이익의 이전이나 증가가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금전을 직접 전달하거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직접 수혜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2)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와 동법 시행령에서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을 열거하고 있으며 공익법인의 활동과 관련된 사안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이재구호금품
- 치료비
- 교육비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6호, 7호

정되는 금품

-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3) 과세최저한

증여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³⁾

선교 현장에서 수혜자들에게 50만 원이 안되는 물품들을 나누어 주는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⁴⁾

4)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연대 납세의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외 선교지에 증여한 금품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증여한 기부자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⁵⁾

5) 소결

해외 선교활동에서 50만 원이 초과하는 물품을 직접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어 국내에서 증여한 거주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지만, 50만 원 이하의 소액 금품을 전달하거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활동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2. 공익법인과 증여세

1)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등이 공익목적으로 출연 받은 재산은,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에 따라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 받은 시점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해당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과세 하겠다는 증여세 과세여부 결정을 잠시 유보한다는 의미)

후원자가 교단 총회선교부 또는 파송선교단체에 기부/후원하고, 기부 받은 총회선교부 또는 파송선교단체가 기부 받은 현금/후원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2항

4) 10년동안 누적된 증여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누적금액으로 증여세과세표준으로 인식하지만 선교현장에서 개별적인 사례에서는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서 본 검토에선 누적 증여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 제4항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직접공익목적사업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이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⁶⁾

선교부나 선교단체가 직접 선교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기관에 기부하는 경우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는 공익법인등에게 증여세를 바로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기부금을 받아 단순히 전달하는 경우는 해당법인을 공익법인으로 지정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교부와 선교단체는 단순히 선교비를 송금하는 방식이 아니라 송금한 선교비로 수행되는 사업을 직접 통제하고,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으로 분류한다.

선교단체가 파송선교사의 선발과정부터 이후 선교사 활동에 대한 멤버케어, 선교보고를 계속 관리하는 경우가 공익법인등이 직접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절차의 사례다.

3) 공익법인 정의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공익법인등으로 규정하고 있고,⁷⁾ 동 법 시행령12조는 열거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종교법인,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공익법인,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공익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단체들로 열거하고 있다.

공익법인등의 유형을 다음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설립근거법률, 정관 규정 등 설립목적에 따라 해당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1항, 2항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비영리법인이 지정신청한 후 재경부장관이 지정고시
-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사회복지, 학술, 문화, 교육, 종교 분야 단체

비영리외국법인은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하는 경우⁸⁾ 재경부장관에게 일반기부금단체로 지정을 신청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면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

4)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보고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은 출연 받은 재산의 증여세를 바로 과세하지 않는 반면 해당 재산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음을 공익법인등이 스스로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인세법 규정은 기부금단체와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한 반면 관련 법규 이행과 이에 대한 보고를 하거나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상증법48조5항, 상증령41조)
-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상증법50의3)
-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서 보고의무(상증법50조)
-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상증법50조3항)
-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의무(상증법48조13항)
- 전용계좌 개설 사용의무(상증법50의2, 상증령43의4)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보관·제출 의무(법법112의2)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 제출
- (기부금단체)의무이행여부 보고
- 장부의 작성 비치의무(상증법51조)

5) 일반 공익법인등과 종교법인의 주요 보고의무 비교

종교법인의 경우 공익법인등에게 부여된 대부분의 사후관리 보고의무가 면제되고 있으며, 일반 공익법인과 종교법인의 주요 보고의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8)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바목, 바목1호 가

보고 의무	공익법인	종교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보고	제외 (부동산, 주식 수령 시는 보고)
세무확인 보고	보고(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는 제외)	좌 동
결산공시	보고	제외 (주식5% 초과 보유 시는 공시)
외부감사: 자산100억, 수입50억, 후원: 20억	보고	제외 (주식5% 초과 보유 시는 감사)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보고	좌 동
의무이행여부 보고(법령39조6항)	보고	제외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 (법령39조5항3호, 소령80조1항 바 목)	보고	제외
결산공시사항 홈페이지 공개 (법령39조5항7호)	보고	제외

주식보유관련 사항 이외에는 대부분의 보고의무를 종교법인에게는 예외적으로 그 사후관리 보고의무를 경감시키고 있다.

모든 공익법인등은 세법 규정에 따라 결산정보등을 국세청 홈택스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령한 기부금과 사용한 내역 또한 홈택스와 단체의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기부자에 대한 책무성과 일반 사회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반해 종교법인은 대부분의 결산정보 보고와 공개의무를 면제 받았기에 법적으로는 공개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산서를 공개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종교법인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 주장을 듣는 사회가 종교법인에 문제가 없다고 인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왜 종교법인에만 특혜를 주느냐는 불신감이 증폭되는 현실에서 종교법인이 선교의 열정으로 복음을 외치지만, 그 외침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거부감으로 돌아오는 현실이다.

일반 공익법인보다 더 투명하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일반 공익법인과는 같은 수준이라도 자발적으로 결산정보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다. 대법원 판례

세법 개정의 발단이 되었다고 하는 대법원 판례 내용은 다음과 같다.⁹⁾

1 사실관계¹⁰⁾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미국 LA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있는 해외 지교회로 송금한 85억 원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한 50억여 원을 부과하였고, 신천지는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당시 관련 규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1호는 공익법인등으로 열거한 종교법인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 언급하고 있었다.

3 판결(2025.5.15) 요지

9) 대법원 2025. 5. 15. 선고2025두30806

10) 사실관계는 2026.8.29 뉴스앤조이 ‘선교탄압’이라던 그 시행령, 문을 연건 신천지였다. 기사에서 발췌함

종교법인의 범위에 대해 관련 규정이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도 구 상증세법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하면서 증여세 부과취소로 판결하였다.

4 판결에 대한 평석

해외 지교회로 85억 원을 송금한 사건에 대한 과세 여부 판단은 a) 85억 원 송금한 사안이 해당 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b) 수증한 해외 지교회가 수증 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공익법인인지여부에 대한 판단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한 사안이었다.

소송의 대상이 해외 현지 교회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다룬 사안이기에 해외 현지 교회가 종교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지만, 해외 현지 교회로 85억 원을 송금한 행위가 정관에서 정한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 또한 공익법인등의 출연 받은 재산 사후관리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대법원이 관련 법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대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조세법률주의 일반 원칙에서 과세할 수 없다는 판결로 후자에 대해서는 판단하였지만,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수행에 대한 정의도 같이 판단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라. 개정 내용 검토

위 판결 이후 종교법인 범위에 관한 상증법과 법인세법 관련 규정모두 개정되었다.

1. 개정 내용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제1호

개정 전	개정 후(2026.2.27)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에 현저히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1) 공포한 날부터 시행 2) 시행 전 출연재산은 종전 규정에 따름

=> 종교법인의 주체를 거주자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한정하여 명시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 1호 마목

개정 전	개정 후(2026.2.27)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및 국내에 있는 그 소속 단체
	1) 공포한 날부터 시행 2) 시행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종전규정에 따름(부칙13조1항)

=> 내국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를 국내에 있는 소속단체로 한정하여 명시

2. 개정내용의 적용

1) 증여세

선교활동을 a) 선교사 인력을 파견하여 수행하는 인적활동과 b) 금품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구분하면 각각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

① 선교활동

해외 현장에 파송한 선교사를 통해 현지에서 인력이 포교 활동을 하는 경우는 개정 이전부터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개정사항이 미치는 영향이 없다.

② 금품 지원

해외 선교 현장에서 50만 원 이하의 소액물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개정 이전과 동일하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현지에서 5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여 전달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2) 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 혜택을 규정한 법인세법 규정과 소득세법 규정은 기존에도 민법 규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내국법인임을 전제로 기부자에게 기부금 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다만 기존 규정은 내국법인인 종교법인의 소속단체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기부금 공제 혜택을 부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부금 공제 혜택을 국내에 있는 소속단체로 한정하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소속단체가 법적으로 본점과 분사무소(지점) 성격을 가지는 경우 본점에 기부한 출연재산으로 본점과 분사무소의 사업수행비로 사용하므로 이번 개정이 미치는 영향은 없다.

그러나, 해외의 소속단체가 경제적 동일 실체를 형성하지 않고 이름만 지회, 지부로 표방하면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3. 선교비 집행 유형별 효과 관리

1) 파송선교사를 통한 선교활동

소속 선교사를 파송하는 경우 해당 선교사는 내국 종교법인의 역할을 해외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로 분류되며, 선교사에 지급하는 금전의 성격에 따라 생활비와 사역비로 구분해서 관리해야 한다.

① 생활비

파송단체가 송금하는 생활비는 소속 선교사의 소득으로 분류되며, 선교사가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과세 관할이 달라진다.

선교부 또는 파송단체의 소속 선교사로 파송되는 경우 국내 가족관계,

부동산 보유여부, 금융자산 보유 여부에 따라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게 되고, 파송한 종교법인의 정상적인 인건비 지급으로서 목적사업비로 분류되기에 증여세 이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내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모든 가족이 해외선교지로 이주한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한국이 과세권을 가지지 않게 되므로 이 경우는 원천징수 절차 없이 파송한 종교법인의 사업비로 분류되고, 증여세 이슈 또한 무관하다.

② 사역비, 활동비

현지 선교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제 발생한 경비를 정산하는 경우 본인의 소득이 아니고, 경비는 파송한 종교법인의 사업수행비 성격으로 증여세 이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현장 상황에서 증빙 처리가 곤란한 경우 선교활동비 규정에 따라 지급 용도와 한도를 준수한 지출액 또한 본인 소득세 또는 증여세 이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③ 특정 프로젝트 사역비

특정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인 활동비 이외 규모가 되는 사역비를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현지에서 선교활동 프로젝트에 소비성 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증빙으로 그 내역을 설명할 수 있으면 소득세,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선교사 명의로 차량을 취득하는 등 현지 법령상 불가피하게 선교사 개인 명의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뿐 아니라 명의신탁 또는 사용·관리 계약, 자금 출처, 법인의 실질적 통제권, 처분 제한, 귀국·사망·파송 종료 시 반환 절차를 문서로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파송한 법인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록으로 관계를 명시하는 경우에는 파송법인의 사업관련 자산취득에 대한 설명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자산을 취득한 후 현지인들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아래 항목과 같이 증여세 이슈가 발생한다.

2) 파송 선교사를 통한 자산 이전

해외 선교지에 교회당 건물을 신축하거나 학교를 건축하는 경우는 의미가 달라진다.

파송단체 또는 선교부, 교회 명의로 현지에서 건물을 취득해서 교회용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교법인의 직접사업비 지출로 분류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허가하지 않거나, 선교 활동이 제한되는 이른바 폐쇄국가(Closed country)의 경우는 이를 수령할 종교법인도 없고, 그렇다고 국내 종교법인 명의를 직접 드러내면서 활동하거나 등록할 수도 없다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일률적인 세법 규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이번 검토 이슈와는 별도로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조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¹¹⁾ 조사대상 선교사의 93%가 향후 선교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그중 45%가 현지 교회 중심 사역 개발을 변화의 방향으로 응답했다.

선교지에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선교지가 선교의 대상지가 아니라 재산 축적의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와 계속적인 자산 이전으로 현지인들이 자립하는 의지와 노력을 포기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증여세 이슈와는 별개로 자산 이전을 통한 선교에 대해서는 심각히 다시 고려해야만 하는 선교 방식이다.

3) 직접 방문 선교(Vision Trip 포함)

교회나 선교단체를 통해 직접 방문해서 선교활동을 하는 경우는 증여세 이슈와 전혀 무관하다.

11) 한국교회선교실태조사, https://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164

4) 교회나 선교부, 선교단체가 해외 선교기관으로 단순 송금

국제NGO를 포함해서 해외 비영리조직에 단순히 송금하는 경우는 타법인출연으로 분류되면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① 해외 선교기관에 송금

선교활동이 돈을 뿌리고 자기만족을 하는 행동이아니므로, 선교는 사전에 분명한 방향성과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순히 자금만 송금하는 행위는 타법인 출연에 해당하며, 종교법인의 목적사업인 선교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송금하는 선교비가 목적사업인 선교활동으로 분류되려면 최소한 선교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을 사전에 결정하고, 송금한 선교비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고, 사용된 결과에 대해서도 계속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종교법인의 직접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절차에 해당한다.

② 국제단체 소속으로 국제본부에 후원금을 송금

국제단체 소속이지만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국제단체와는 별개의 법 인격체이다. 이 경우 국제본부에 송금하는 금액은 타법인 출연금이 되거나 국제협력사업의 분담금을 부담하는 형식이 될 수 있다.

타법인 출연금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국제협력사업 분담금인 경우에는 협력사업의 구체적 분담관계, 한국에서 보내는 분담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추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해외 기관에 송금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와는 다르게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서 기부금단체인 경우 국내에서 모금한 후원금을 해외 모법인으로 송금할 수는 있지만 출연재산 사후 관리 규정에 따라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해외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소결

국내 종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이 해외 선교기관을 포함한 NGO에 송금하는 경우 단순히 좋은 사역을 하는 기관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

하고, 송금하는 국내법인이 해외 현장에 방문하여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차원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해당 송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의도한것인지, 그에 따라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그 결과는 의도한 계획과 일치하는 지 등을 계획하고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을 때 법인의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사용되었다 할 수 있다.

이번 세법 개정이 선교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해외 선교기관에 자금만 이체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계획하며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선교비 집행 절차로 개선하는 도우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5) 개인이 직접 해외선교기관으로 송금

개인 독지가가 해외 선교기관 또는 해외 선교사를 직접 후원하는 경우 현재로도 기부금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여서 후원자로서의 기부금 공제효과는 이전과 동일하다.

증여세에 관해서는 해외 선교기관과 해외에 거주하는 개인 선교사는 종교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비거주자인 해외 단체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내 후원자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개인은 직접 해외 단체 또는 해외 선교사 개인을 후원하지 않고 파송단체 또는 교단 선교부를 통해 선교비를 후원하는 경우는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이 무분별하거나 통제되지 않는 선교비를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고, 교단의 선교부 또는 파송 선교단체의 관리를 받으며, 선교가 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이번 세법 개정이 선교 현장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 현장의 무분별성과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 기타 Q&A 사례

Q1) 오지의 소속단체가 없는 선교사들에게 직접 송금하는 활동지원금 비과세여부 및 증빙자료

A1) 개인이 직접 지원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교회 또는 공익법인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교회가 수행하려는 오지의 선교활동을 현지 선교사에게 용역을 주어 수행하는 개념이 됩니다. 선교활동비의 경우 실비 정산하는 개념으로 증빙처리가 되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은 해당 선교사와의 관계 설정에 따라 근로소득/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Q2) 목적사업으로 명시한 선교사업으로 선교사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결과보고도 받는 사업형태로 해야 하는지?

A2) 선교사 후원 자체가 목적사업인 것이 아니라 현지 선교사업 자체가 목적사업이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 비용인 선교사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목적사업수행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선교사를 통해 수행하는 선교활동 결과들을 보고 받고 향후 방향들을 계획하고,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바. 기타 선교 현장에서 고려할 사항

세법개정 내용과는 별개로 선교 현장에서 관행적인 처리 방식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1. 행정비와 멤버케어

1) 행정비

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들은 파송 선교사 후원금의 일정 금액을 행정비로 공제하고 해당 행정비로 선교사 선발과 관리, 후원금 관리, 멤버 케어 등의 행정관리업무를 수행한다.

파송 선교단체와 교단 선교부의 법적 실체 구성이 다르기에 동일하게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행정비가 파송 법인이 관리하는 용역의 수수료인지 아니면 파송 선교사들이 파송법인의 행정비를 후원금 또는 회비로 부담하는 것인지에

대한 성격 규명이 분명하지 않다. 결산서에 반영하는 계정과목 또한 분명하게 관리 안되는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다.

파송 선교사에 대한 후원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원칙을 가지는 경우는 관리용역에 대한 수수료로 볼 수 있으며, 종교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실비로 수령하는 금전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므로 관리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세무 이슈는 없다.

선교사들이 부담하는 후원금이라고 하면 행정비 부과기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은 후원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파송단체의 경우 선교사들이 해당 법인의 회원으로 구성되므로 부담하는 금액을 회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행정비는 파송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를 충당하는 성격의 회비로 회계 처리 할 수 있다.

2) 멤버 케어

선교사 파송 전 준비부터 현지 사역 중, 위기 상황, 안식년, 귀국과 재정착까지 선교사의 전 생애주기를 지원하는 개념이며, 선교단체가 종교법인으로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설명 요소가 된다.

2. 선교사 생활비 소득 분류

선교부, 파송단체와 선교사와의 관계는 일반적인 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관계와는 다르다.

현재는 거주자인 소속선교사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를 대부분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지만 대부분 소속 선교사가 후원자를 모집하고, 모집한 후원비로 생활과 활동비로 충당한다. 즉, 소속된 선교사라는 개념이 소속한 종교법인에서 경제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 상황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사. 나가는 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종교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 선교활동(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법인에 다른 공익법인보다 차별적으로 무거운 부담을 부과하는 경우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세법 규정은 선교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종교법인에 일반 공익법인보다 더 무거운 보고·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도 아니다. 오히려 종교법인은 여전히 일반 공익법인에 비하여 상당한 범위에서 재정보고와 공시의무를 경감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곧바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나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해외 선교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대응이다.

교단 선교부, 파송 선교단체 또는 교회가 소속 선교사를 파송하고, 현지 선교활동을 적절하게 통제·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선교활동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개인이 소속과 자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해외 선교사나 선교기관에 직접 선교비를 송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선교활동에 대한 일률적인 제한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선교사의 자격과 소속을 검증하고, 이단·사이비 단체의 침투를 예방하며, 건전한 선교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 선교기관에 선교비를 단순히 송금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파송 법인이 사업의 계획·집행·평가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선교사업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 세법 개정을 계기로 선교 현장이 더욱 건강하게 변화하고, 후원금으로 조성된 선교비의 집행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교회와 선교단체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을 넘어 일반 공익법인에 준하는 보고와 공시를 자발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세상이 교회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마5:16).

논찬 1.

- 김태정 선교사 (남서울 평촌교회 선교 목사
전) Hope 선교회 대표)

KRIM이 조사한 2024년 말 한국 선교사의 수는 21,612명이며, 전원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선교단체나 교단 선교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KRIM의 통계에는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교회의 파송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사역하는 독립군들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들 선교사들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선교 단체에 속하여 선교비와 사역을 관리받고 있다면, 선교비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로부터 공익활동을 한다고 인정받은 단체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자(선교사)들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 혜택에 대한 책임

정부는 선교단체와 같은 공익기관에 선교비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고, 기부금 영수증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해 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발제자가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혜택에는 ① 선교사가 선교비를 정부가 공익사업으로 인정한 목적사업인 선교를 위해 직접 지출하고, ② 그 내역을 입증하고 보고하는 등 사후관리 지침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출관리와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은 선교비에 대한 증여세 면세와 기부금 공제의 틀을 제공하는 선교단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단체는 선교사에게 송금된 선교비가 직접 선교사역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관리하고(선교외의 목적으로 지출되거나, 선교사 개인 재산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이를 대외적으로 입증해 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그 선

교단체를 신뢰하고 그러한 혜택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2. 선교를 위한 역할 분담과 협력

선교사역은 선교사를 양성하고 파송하는 교회, 선교사의 사역과 생활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선교단체, 그리고 사역을 수행하는 선교사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야만 건강하게 수행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타문화권에 파송되어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정착, 적응, 사역을 계획할 때 선교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경험이 있고 현지에 네트워크가 있는 선교단체의 지도와 지원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단정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독불장군처럼 혼자 사역하는 선교사보다 건강한 선교단체의 관리와 지도를 받는 선교사가 바른 선교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교단체의 존재 이유는 단순히 선교사를 모집하여 파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교사의 사역, 생활, 재정을 지원하고 관리하여 바른 선교를 건강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은 증여세 문제와 관계없이 수행해야 할 선교단체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22년째 선교목사로 섬기고 있는 남서울평촌교회 선교규정에는 ‘우리 교회는 선교사의 사역과 생활, 재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있다고 신뢰가 되는 단체에 소속된 선교사만 파송하고 후원한다’ ‘모든 선교비는 선교단체에서 관리하는 구좌를 통해서만 송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관리에 더하여 ① 선교후원금에 대한 기부금 공제 혜택, ②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선교후원금에 대한 증여세 면제까지 감안한다면, 선교사가 이러한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선교단체에 소속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3. 선교단체의 자격요건

선교단체라는 이름을 가진 곳에 소속되어 활동한다고 해서 증여세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속된 선교단체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익법인 등으

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이 아닌 선교단체의 경우 ① 관할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②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이 포함된 정관을 마련하여 제출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③정부로부터 공익법인 등(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에는 ①수입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고 ② 해산 시 재산을 국가 혹은 유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며 ③홈페이지를 통해 모금액과 활동실적을 공개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선교단체의 관리 책임

선교단체가 선교사에게 지출하는 선교비가 정관에 명시된 공익목적사업(선교활동)에 직접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사후관리 요건을 지킨다면 선교사들에게 송금하는 선교비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선교단체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1) 창구의 일원화

선교사는 모든 후원금을 선교단체가 선교사에게 부여하고 관리하는 계좌를 통해서만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선교단체는 선교사가 교회나 성도들이 보내온 선교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단체는 소속 선교사들에게 단체에서 관리하는 선교사 고유의 계좌(가상 계좌)를 부여하고, 선교사가 후원금 모금을 위한 홍보물이나 기도편지에 단체에서 부여한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를 표시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창구의 일원화는 증여세 이슈와 관계없이 선교단체의 본질적인 역할인 선교사의 재정적인 책무를 감독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기도 합니다.

2) 프로젝트의 사전 검증

선교사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모금을 하려면 그 사전에 선교단체에 보고하고 심의와 허락을 받은 후, 선교단체에서 부여한 계좌를 통하여 후원금을 모금

하고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단체는 후원자나 교회가 질문할 때 그 프로젝트의 필요성, 타당성을 설명하고 추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계좌의 분리, 영수증 발행

선교사가 장기적이고 큰 규모의 사업비를 모금하여 추진할 경우, 통상적인 선교비 모금 계좌와 별도로 사업비 계좌를 만들어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한때 선교단체의 재정 운영에 대한 불신이 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모금된 금액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행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보고를 후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이러한 불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결과 보고

선교단체는 선교사가 수행한 사업비나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선교사로부터 그 결과를 보고(사업, 재정)받고, 검증한 후 후원자나 후원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교회와 후원자는 선교사가 제시하는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객관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렵지만, 선교단체의 검증을 믿고 후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러한 보고는 기본일 것입니다.

5) 사업비에 대한 행정비

선교단체는 일반적인 선교후원금에는 10% 내외의 행정비를 공제하는데, 프로젝트성 사업비의 경우 행정비 공제는 선교단체별로 다양합니다. (대체로 일반 선교후원금에 비하여 낮게 공제하며, 1%, 3%, 5% 등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재정 규모가 큰 경우도 있기에 행정비를 3% 공제한다고 해도 큰 금액이 되어 후원자나 교회, 선교사가 선교단체를 우회할 유혹을 받게 됩니다. 선교단체는 프로젝트성 사업비 모금에 대한 행정비 공제를 결정할 때 이 부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5. 교회와 후원자

선교단체 수준의 자체 선교부를 가지고 있는 일부 대형교회를 제외하면 지역교회가 선교사의 사역이나 재정적인 책무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① 교회에는 선교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고, ② 타문화권 선교현장에서 펼쳐지는 사역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현지 네트워크도

없으며, ③ 교회는 선교사와 관계로 얽혀 있기에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기에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할 때 생활, 재정, 사역에 대한 책구관리 부분에 대한 신뢰가 되는 단체인가를 확인하여 소속시키고 사역과 재정에 대한 관리를 위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송선교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지원할 것인가 등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소속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려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선교후원금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후원금도 선교사의 개인 통장으로 직접 송금하지 않고, 선교단체에서 관리하는 계좌를 통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후원금이 목적사업대로 지출되었는가를 입증하는 책임이 선교단체에 있게 되고, 증여세 부관에서 면제되며, 개인 후원자는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나가는 말

저는 이번 세법 개정에 있어서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하다고 봅니다. “공익 목적으로 모금하고 지출하는 것은 증여세 면제를 해 주겠으니, 그렇게 지출되는 것을 관리하고 입증하고 보고하라.”

이를 위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교단체는 공익법인으로서의 법적인 자격요건을 갖추고, 선교사의 사역과 재정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를 통하여 교회와 정부로부터 신뢰받는 선교의 통로가 되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후원 계좌로 들어오는 헌금을 모아서 매월 선교사의 요청에 따라 송금하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한 선교사로부터 ‘앞으로 모든 선교후원금은 단체에서 부여한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송금해 주십시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단체에서 부여한 계좌와 개인 통장번호를 함께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세법 개정이 주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번 세법 개정이 선교사가 무분별하게 통제되지 않는 선교비를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고, 선교단체의 관리를 받으며 바르게 선교를 진행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선교현장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현장의 무분별성과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선교비 면제 ‘사실상 박탈’ / 증여세 폭탄 비상’ ‘선교하지 말라는 건가’, 대정부 투쟁과 같은 과장되고 왜곡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높은 현실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기에 극히 조심스럽습니다.

선교단체와 선교계는 이번 세법 개정에 대해 정부의 입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선교비 관리체제를 만들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세력 규합을 통한 감정적 투쟁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논찬 2.

- 이천화 회계사 (회계법인 성지 이사
사)아시아미션 감사
사)기독교경영연구원 감사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겸임교수)

1. 2026년 2월 상속세법개정 이전에도 해외소재 종교단체 증여세과세 근거 존재 -

<서면 2023-상속증여-2769, 2023.11.29>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영리외국법인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하는 경
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재산-72, 2011.2.15.>

- 1)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의 보급 기타 교
화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
공익법인 등으로 보는 종교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
하는 것임.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
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같은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는 수증자
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 과세표
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2.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과세관청 상증법 개정의 근거와 한계점

<개정의 근거>

- 1) 외국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급하는 해외선교비는 상증세법 48조의 입법 취지인 공익적 성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 2) 상증령 38조의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현재 종교법인은 제외, 특정헌금과 부동산은 대상)인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3) 대안으로 공익법인의 범위에 외국법인과 비거주자를 제외시킴

<개정된 문제점과 한계점>

특정교단이 해외 지교회로 85억원을 송금한 사건에 대한 과세 여부 판단을 송금한 재산이 해당 종교법인의 직접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에 사용되느냐에 대한 판단이 우선시 되어야 했는데 이것을 간과하고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송금한 사실이 근거가 되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과세근거에 대한 무리한 해석으로 과세한 결과가 결국 이런 판결을 가져오게 한 것.

이러한 판결로 과세당국은 기존에 예규로 존재하던 내용을 상증세법 시행령에 외국소재 비영리법인과 비거주자를 공익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관련법을 개정함

- 1) 공익성의 유무에 대한 확인 절차를 수립했어야 한다.
 - A.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 B.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 확보
 - C. 현지에서 실시한 사업에 대한 수혜자에 대한 자료 확보
 - D. 사후평가보고서 등 준비
- 2) 현재 종교법인에게 제외되어 있는 사후관리 절차를 적용하도록 했어야 한다.
 - E. 특정지출 및 일정규모 이상의 금액의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
 - F. 정산보고서 및 수혜자 평가 등
 - G. 종교의 특성상 특정지역의 한계를 인정하는 방법 등
- 3)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여도 증여세 납무의무가 종결되는 것은 아님

3. 유형별 효과에 대해서

1) 파송선교사 생활비

A. 거주자인 경우 :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평신도 선교사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기타종교관련 종사원으로 구분되어 종교인소득으로 소득신고가 가능함

추가적으로 해외선교사도 선교단체 등의 소속 선교사로 등록 관리하여 생활비와 종교활동비가 구분되어 관리되어야 하고 향후 선교단체 등은 종교인 소득신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홍보 및 준비가 필요

2) 파송선교사를 통한 자산 이전

A. 증여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송단체 또는 선교부, 교회 명의로 현지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이에 대한 선교단체의 관리가 필요.

B. 현지 선교사 개인명의 자산 포함하여 본부에서 총합적으로 관리예) (재) 미감리교대한부인선교부유지재단. 1924년 설립.

국내 토지 및 건물 보유 , 임원선임을 미국 감리교 본부에서 임명

3) 교회나 선교부, 선교단체가 해외 선교기관으로 단순 송금

A. 타법인 출연으로 분류되어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B. 상증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16호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본다.

- 주무부서의 적극적인 협조 및 확인 요청이 필요함

